

2.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478號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단서중 “제4조제1항 및 제20조의2”를 “제4조제1항·제17조 및 제20조의2”로 하고, 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의 내용

제11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전에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처리등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8항을 동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 또는 주택은행에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항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중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를 “(1)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로 하고,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를 “(2)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장기예치자의 순에 따라 우선청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⑤투기과열지구의 주택분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청제한기간은 월납입금의 연체 또는 선납일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중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동 지역에서”를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는 지역 또는 동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동 지역 또는 동 구역안에서”로 하고, “제3항·제6조제7항 또는 제11조제7항”을 “제6조제7항·제11조제8항 또는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지정업자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를 “지정업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구역에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를 “시장 또는 군

수에게 통보하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은행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범위와 입주자 선정일시를 정함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하는 경쟁과열구역의 경우 그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청약예금가입자 및 청약부금가입자중 장기예치자의 순에 따라 우선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단서 및 제22조의2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제2항중 “지정업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지정업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지정업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2항·제5항·제8조제2항·제13조의2·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착공에 관한 확인, 입주일자 연기, 입주자모집에 관한 승인, 투기과

치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기당첨자

나. 1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소유자.

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라.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 주거면적중 1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소유자.

제13조제2항제2호중 “(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를 “(2년이 경과된 자중 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다만, 제2항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2년이 경과된 자

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를 “(2년이 경과된 자중 제2항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본문중 “청약저축등의 납입회수 또는 예치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청약저축등의 납입회수·납입금액 또는 예치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이전일의 다음날 이후 납입하여야 할 월납입금에 대하여는 당초약정납입일에 주택신청제한기간을 가산한 날을 약정납입일로 본다.”로 한다.

제13조제7항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주택 이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를 “제2항제1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주택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순위와 다르게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주택 등을 정하여 공급하는 세대수의

열지구의 지정·공고·대상주택규모 결정·채권매입액 상한결정, 입주자선정, 경쟁과열구역의 지정 및 입주자선정 협의 등은 각각 건설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1주택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

금에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2. 지하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거면적중 1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소유자